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 계 학 과

강 지 숙

2013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지도교수 김 봉 현

강 지 숙

이 논문을 회계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강지숙의 회계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2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in Nonprofit Corporation

Ji-Suk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Bong-Hye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3.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1.2.1. 연구의 방법 ····· 3

1.2.2. 연구의 범위 ····· 3

Ⅱ. 공익법인의 개념 및 선행연구 ····· 4

2.1. 공익법인의 개념 ····· 4

2.1.1.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범위 ····· 5

2.2.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 7

2.2.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 7

2.2.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 8

2.2.3.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 8

2.2.4.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 9

2.3. 공익법인 현황 ····· 10

2.4. 선행연구의 검토 ····· 11

Ⅲ. 공익법인 과세제도 ····· 14

3.1. 공익법인 조세지원제도 ····· 15

3.1.1. 법인세 ····· 15

3.1.2. 부가가치세 ····· 22

3.1.3. 상속세 및 증여세 ····· 23

3.1.4. 지방세 ····· 25

3.1.5. 기부금 ····· 25

3.2.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 28

3.2.1. 납세협력의무 ····· 2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2.2.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의무 ····· 34
3.3. 주요국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 42
3.3.1. 미국 ····· 42
3.3.2. 일본 ····· 47
3.3.3. 주요국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비교 ····· 50

Ⅳ.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개선방안 ····· 53
4.1.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3
4.1.1. 공익사업 범위의 확대 ····· 53
4.1.2. 수익사업 범위의 축소 ····· 54
4.1.3. 중고물품의 공익목적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55
4.1.4. 기부금 공제범위 및 공제한도 확대 ····· 56
4.1.5.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비과세 한도 확대 ····· 57
4.1.6.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완화 ····· 58
4.2.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9
4.2.1. 주무관청 및 설·폐기준의 일원화 ····· 59
4.2.2. 공정한 공익성 검증시스템 도입 ····· 60
4.2.3.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 마련 ····· 61
4.2.4. 외부감시체계 구축 및 강화 ····· 62
4.2.5. 수혜자선정 시스템 마련 ····· 64

Ⅴ. 결론 ····· 65

참고문헌 ····· 70

국문초록 ····· 73

영문초록 ····· 7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1-1> 연도별 공익법인 수 현황 ····· 2

<표 2-1> 연도별 법인 수 현황 ····· 10

<표 2-2> 연도별 공익법인 현황 ····· 11

<표 3-1> 기부금 분류 ····· 26

<표 3-2> 기부금 손금한도 및 이월공제 ····· 28

<표 4-1> 기부관련 정부기관 및 소관 법령 ····· 59

<표 4-2> 주무관청별 재단 현황 ····· 6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 림 목 차

[그림 2-1]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 7

[그림 2-2]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 9

[그림 2-3] 공익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 10

[그림 3-1] 미국의 비영리기관 분류 ····· 4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 론

1.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은 2009년 1.15명으로 OECD국가 평균 1.74명 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며 2020년에는 1.35명, 2040년에는 1.42명으로 계속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또한 국내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11.8%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15.7%로 고령사회에 안착되고 2030년에는 20%넘어 초고령사회[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현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현상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문제, 계층간 양극화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공공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분야와 수요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 요구되어지는 사회복지 분야가 다양해지고 요구되어지는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고용안정, 출산장려 등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단독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전문성 결여문제가 발생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사회에서 재정적인 한계도 보인다. 국가는 이러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에게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국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대신 제공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국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법인의 수

---

1)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 통계청. 2011.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3) 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4) 연합뉴스 2012.9.27일자. 65세이상 고령인구 전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표 1-1>과 같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익법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27,500개에서 2010년도 29,132개로 1,632개 증가하였다.

<표 1-1> 연도별 공익법인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익법인 수	27,500	27,793	27,811	28,905	29,132
전년대비	-	+293	+18	+1,094	+227

출처 : 국세청, 2011. 국세통계연보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단계에 있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공익법인의 수 또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진다. 또한 제3섹터[5]로서 공익법인이 사회에서 감당하는 공익활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요구되어지는 공공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참여와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진다.

국가에서는 공익법인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공익법인에 대하여 설립·운영, 조세감면, 면제 등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세제상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다보니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증여세의 회피, 출연재산의 사적횡령 등 여러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경영권 세습, 재벌들의 지배구조 문제, 종교기부금 영수증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공익법인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공익사업에 조세지원은 당연한것이나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공익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익법인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저해한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5) '제3섹터'란 본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어느 부분에도 속하지 않는 분야의 모든 조직을 일컫는 말이나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특수법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며, 비정부기구(NGO)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조세지원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게하고 이러한 조세지원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과세제도를 조세지원제도와 사후관리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주요국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기부활동을 촉진시켜 공익법인을 활성화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2.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과세제도를 연구하였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논문과 국세청 간행물, 관련 법규를 통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이론을 고찰하고 각종 도서 및 인터넷 등과 연구자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를 서술하였으며 제2장은 공익법인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우선 공익법인의 개념과 공익사업의 범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공익법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주요국의 공익법인 과세제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기부금관 관련한 공익법인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로서 납세협력의무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의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공익법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공익법인의 개념 및 선행연구

2.1. 공익법인의 개념

공익법인이란 학술, 자선,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사업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일부 계층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범주안에 속하며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며 넓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보다 범위가 넓으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과 조세제도를 통한 규제제도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2.1.1.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범위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익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 제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

•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 전시사업 및 중소기업 글로벌지원센터의 건립·운영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2.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공익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범주안에 포함되며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공익성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구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관계는 [그림 2-1]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안에 포함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모두 포함된다.

[그림 2-1]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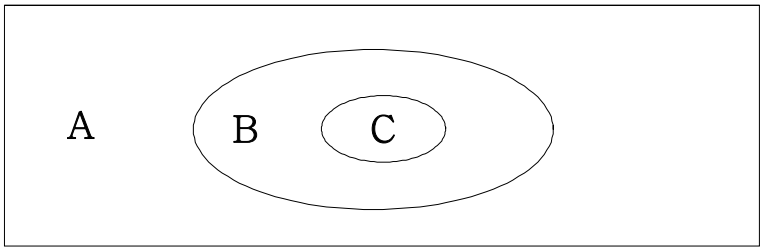

A: 민법상 비영리법인
B: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C: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출처 : 국세청. 2012. 공익법인 세무안내

2.2.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우리나라의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민법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6]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은 이 중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민법 제32조에 열거된 학술, 종교, 자선사업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유형을 열거한 것일 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2.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보조나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사단법인의 설립, 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일 뿐이다.

2.2.3.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

---

6)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7)]

민법 또는 사립학교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르다.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일부 계층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림 2-2]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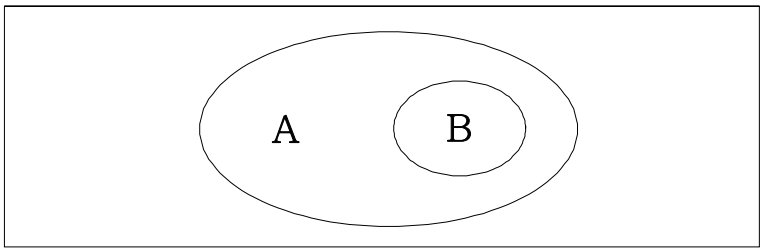

A: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B: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등을 갖는다.

2.2.4.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가지므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면 납세의무를 갖는다.

공익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관계는 [그림 2-3]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 범주안에 포함되어 사업

7) 법인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림 2-3] 공익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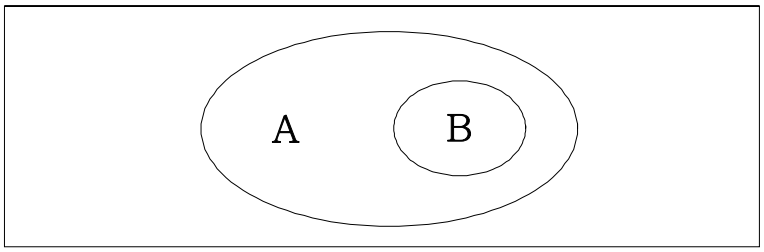

A: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
B: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2.3. 공익법인 현황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일원화된 관리주체가 없고 주된 목적사업과 관련한 각 주무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연도별 법인세신고를 한 법인수는 <표 2-1>과 같다. 2010년 총 신고 법인수는 440,023개로 이 중 영리법인은 420,225개이며 비영리법인은 19,798개로 전체 법인의 4.50%를 차지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는 2006년 15,448개에서 2010년 19,798개로 증가하였으며 총 법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4.38%에서 4.5%로 증가하였다.

<표 2-1> 연도별 법인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352,647	372,141	398,331	419,420	440,023
영리법인	337,199	355,472	380,308	400,217	420,225
	(95.62%)	(95.52%)	(95.48%)	(95.42%)	(95.50%)
비영리법인	15,448	16,669	18,023	19,203	19,798
	(4.38%)	(4.48%)	(4.52%)	(4.58%)	(4.50%)

출처 : 국세청, 2011. 국세통계연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도별 공익법인 현황은 <표 2-2>와 같다. 공익법인의 전체수는 2006년 27,500개, 2008년 27,811개, 2010년 29,132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유목적사업별 공익법인의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종교보급법인이 17,863개로 61%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학술·장학법인이 3,134개로 11%, 사회복지법인이 2,895개로 10%, 교육사업법인이 1,735개로 6%, 예술문화법인이 773개로 3%, 의료목적법인이 671개로 2%, 기타 공익법인 2,061개로 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 연도별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종교 보급	사회 복지	교육 사업	학술· 장학	예술 문화	의료 목적	기타
2006년	27,500	17,135	2,617	1,858	2,837	493	478	2,082
		(62.31%)	(9.52%)	(6.76%)	(10.32%)	(1.79%)	(1.74%)	(7.57%)
2007년	27,793	17,591	2,692	1,751	2,937	561	495	1,766
		(63.29%)	(9.69%)	(6.30%)	(10.57%)	(2.02%)	(1.78%)	(6.35%)
2008년	27,811	17,586	2,693	1,745	2,960	572	503	1,752
		(63.23%)	(9.68%)	(6.27%)	(10.64%)	(2.06%)	(1.81%)	(6.30%)
2009년	28,905	17,958	2,830	1,749	3,163	673	610	1,922
		(62.13%)	(9.79%)	(6.05%)	(10.94%)	(2.33%)	(2.11%)	(6.65%)
2010년	29,132	17,863	2,895	1,735	3,134	773	671	2,061
		(61.32%)	(9.94%)	(5.96%)	(10.76%)	(2.65%)	(2.30%)	(7.07%)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2.4. 선행연구의 검토

공익법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역할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최근에서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문헌조사에 의한 연구들이며 실증적 분석을 통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를 위해서 공익법인과 이와 관련한 과세제도 및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조성한(2002), 김갑식(2009), 최현태(2009)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증대를 위한 공익법인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성한(2002)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재단은 비영리부문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동안 강력한국가라는 환경적 변수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공익법인은 국가 사회서비스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의도적 활성화작업이 필요하며 공익재단은 공익법인 중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비영리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갑식(2009)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관심이 증가되면서 공익법인의 운영에 신뢰성, 도덕성,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부정과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부금의 감소로 이어져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부담증가로 이어져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현태(2009)는 공익법인이 우리사회의 비영리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들 중에서 비중과 존재형태로 볼 때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선진화사회에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은 계속 증가하여 공익법인 제도를 고찰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이호성(2006), 조영탁(2007), 김일석(2007), 김갑식(2009)은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호성(2006)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달라 조세적용에 혼란을 주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차등비율 설정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인세 구분경리 실시를 위한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 기준 마련,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일한 비율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준 재검토 등을 주장하였다.

조영탁(2007)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확대와 법인세감면 강화, 기부금지원 강화, 주식 출연 및 취득한도 완화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를 주장하였으며 김일석(2007)은 공익법인의 재원마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위하여 법인세율의 인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기준 차별 배제 및 설정범위 확대, 출연자산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완화, 이중적 납세협력의무 개선, 주식 보유기준 제한제도의 완화, 기부금공제 확대,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김갑식(2009)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의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또는 비과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연구안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졌으며 사후관리제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천주석(2004), 조영탁(2007), 최현태(2009), 고재국(2010), 김진수・ 김태훈(2011)의 연구에서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천주석(2004)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장부작성의 비치 및 재무자료의 제출 의무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확대 등을 주장하였으며 조영탁(2007)은 통합관리기관 설치를 통한 공익법인관리 일원화,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 감사제도 도입 등을 실시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현태(2009)는 공익법인의 본질제고를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의 인가주의 또는 준칙주의로 전환, 공정한 감독기관의 설립, 입법과정상의 과오나 미비에 의해 발생하는 규정의 보충과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재국(2010)은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강화를 위하여 공익법인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 민간감시단체의 활성화,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 공익법인 공시의무대상 확대, 공익법인 사후관리 의무규정 추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과 공익법인 간 회계 멘토링 체결 등을 주장하였다.

김진수, 김태훈(2011)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주무관청마다 공익성에 대한 이해가 다르며 구체적・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 일관성 있게 선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무관청과 독립된 공익성 검증기관 설치, 통합적인 공익성 기준 제정, 검증기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주장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공익법인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 및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제고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여 공익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또한 기존 연구와 동일한 방향에서 공익법인의 과세제도를 연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과세제도와 사후관리제도를 구분하여 조세지원제도뿐만 아니라 규제하고 있는 제도를 포함한 과세제도와 조세지원 이후 공익법인을 사후관리하는 제도 측면에서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공익법인 과세제도

공익사업은 사실상 국가 또는 사회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사업이므로 이를 대신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익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세제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각 세법에서 이와 관련한 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지원제도에는 공익사업의 법인세 비과세, 공익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공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조세지원이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여러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제도에는 보고서 등 제출의무, 외부 회계감사, 주식취득 및 보유의 제한 등이 있다.

이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하여 본래 목적사업에 전념할 수 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

이 장에서는 공익법인의 조세지원제도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정리하여 발간한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2011)책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과세제도를 조세지원제도와 사후관리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미국의 일본의 조세지원제도 및 사후관리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3.1. 공익법인 조세지원제도

3.1.1. 법인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에 대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인격은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지만 순자산증가설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소득원천설에 근거하여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1) 수익사업의 범위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 및 법인세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세소득의 범위[8)]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8) 법인세법 제3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익사업의 범위[9)]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영리법인과 중복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10]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1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과 법인으로보는단체로서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며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전액(100%) 손금산입 대상소득

- 이자소득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50%)
- 배당소득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제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12)]의 수익사업 소득금액(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중앙회의 이자·배당소득

(2) 80% 손금산입 대상소득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사업소득

---

10)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11) 법인세법 제29조

1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서 전액손금산입 대상 이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

(3) 70~100% 손금산입 대상소득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중앙회의 명칭 사용료

(4) 50% 손금산입 대상소득

위의 (1),(2),(3) 이외의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해당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대여하는 금액, 지정기부금의 지출 등에 사용되어야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산입한 해당 사업연도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해산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취소[13]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익금산입한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

1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란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승인 취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된다. 즉, 법인세 신고납부와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 할 수 없다.[1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15)]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 건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16)]에 해당하는 주식과 법인세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상장거래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

---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1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서류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규칙 별지 56호 서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법규칙 별지 27호 서식(갑)(을))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법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1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호 및 제4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지상권과 영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3.1.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은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갖는다. 즉, 비영리법인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또는 종교의식, 자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7]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

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 및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7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용역

2)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종교, 자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8)]

•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1.3.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출연이라 함은 민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을 공익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세 과

1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4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세가액 불산입 후 당해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한다.[19]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는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주식이 그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20]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등을 과세가액 불산입받은 공익법인 등이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1.4. 지방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80%를 경감하고 지방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80%를 경감한다.

3.1.5. 기부금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21] 기부금 대상에 따라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며 개인인 경우는 일정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 포함되며 법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는 모두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

21) 기존 법정, 특례, 지정 기부금 구분체계를 법정, 지정기부금 구분체계로 간소화 함(2012.개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입하며 개인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의 10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손금불산입한 법정기부금은 그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2012.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이월하여 한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주무관청 등록 조합·협회·조합 등에 지급한 회비 등이 포함되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한다.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개인은 공제 후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한다.

손금불산입한 지정기부금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월하여 한도 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3)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란 법정·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말하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동창회 기부금 등이 있다.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며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표 3-1> 기부금 분류

종 류	법인	개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 (50%)	법정기부금 (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전문모금기관) •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 해당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해당없음	
•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지정기부금 (10%)	
• 종교단체 기부금		지정기부금 (10%)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22]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23]에 열거한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주무관청 등록 조합 등에 지급한 회비 • 해외지정기부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30%)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해당없음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동창회·향우회·종친회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 정치자금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	100%

22) 법인세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의 장,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익신탁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3)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2> 기부금 손금한도 및 이월공제

종류	구분	손금한도	이월공제
법정기부금	법인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3년
	개인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	법인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5년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기부금 10%)	

3.2.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3.2.1. 납세협력의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공익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에는 보고서 등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결산서류 공시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

1) 보고서 등 제출 의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24]

결산에 관한 서류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말하며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신고 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분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하며 결산보고서 주무관청 제출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동 결산보고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주식 보유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다.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25)]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한다.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하며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장부의 작성방법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입・지출의 변동내용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및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며 장부와 증빙서류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면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의 0.07%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과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설립자, 임직원, 이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선임할 수 없다.

외부전문가는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사항과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세무확인서를 작성한다.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는 당해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의 0.07%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외부 회계감사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27]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제1항(종교) 및 2호(교육)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2007.12.31 개정된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을 제외하고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용계좌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는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 이며 전용계좌 사용대상거래가 아닌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27)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는 2008.1.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하며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6) 결산서류 공시 의무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hometax.go.kr)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공시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대상 결산서류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주식관련 서류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7)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8)]

작성대상은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이며 2008년 말일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09년도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10년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를 말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법인별·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8)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익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

28) 법인세법 제112조의2
29)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2.2.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의무

공익사업의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의무에는 출연재산·출연재산 매각금액·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주식취득 및 보유의 제한,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시 제한,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자기내부거래 제한 등이 있다.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30]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며 출연재산이 현금 이외의 재산인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이다.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예외로 사용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보고서 등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만약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당초 출연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2) 출연재산 매각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31]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식된 재산을 포함한 총 매각대금에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매각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매각대금으로 일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된다.

매각대금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공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과 90%의 비율에 미달 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매각대금 중 2년 이내에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미달 사용액의 10% 가산세를 부과한다.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32)]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33)]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4조[34)]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계산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목적사업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33)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4)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은 다음과 같다.
-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70%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등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당해 사업연도에 미달사용금액이 있더라도 운용소득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개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 실적금액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5년 평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4) 주식취득 및 보유의 제한

(1)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출연한 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출연한 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35]의 경우 10%)를 초과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라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3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익법인이 5% 또는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아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출연한 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37]

(3) 5%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의무

공익법인이 보유주식을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 보유하여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고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내에(2001.12.31까지), 5%초과 20%이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내에 (1999.12.31까지) 그 초과분을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38] 단, 성실공익법인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매각의무 적용이 제외된다.

공익법인 등이 주식처분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그 보유기준(5%)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

• 외부감사 이행
• 전용계좌 개설·사용
•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 못한다.

(4)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39]

공익법인이 주식처분유예기간 경과후에도 총자산가액 30%(예외적인 경우 50%) 이상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한다. 단, 성실공익법인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은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제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지출된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40]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출연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며 이사수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단,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와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41]

광고·홍보의 범위는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한다.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홍보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7) 자기내부거래 제한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라 함은 특수관계자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42]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와 출연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당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하고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한다.

---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생지·직업·학연 등에 의하여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43]

공익법인의 설립 시 또는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그 공익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수혜자범위의 한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잔여재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식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잔여재산 중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하여 증여세(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다.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3. 주요국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3.3.1. 미국

미국은 비영리기관의 분류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공익법인이라는 별도의 용어로 비영리법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미국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서는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라는 공익성테스트를 통하여 비영리기관의 공익성 유무를 판단하여 비영리기관에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과 기부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해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

손원익(2000)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사회기관은 정부・영리・비영리기관단체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비영리기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1]과 같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과 가장 유사한 분류는 IRC 제501조(c)(3)의 종교, 자선, 교육, 과학, 문학 등의 기관으로 제한되는 면세공익단체인 D영역이다.

[그림 3-1] 미국의 비영리기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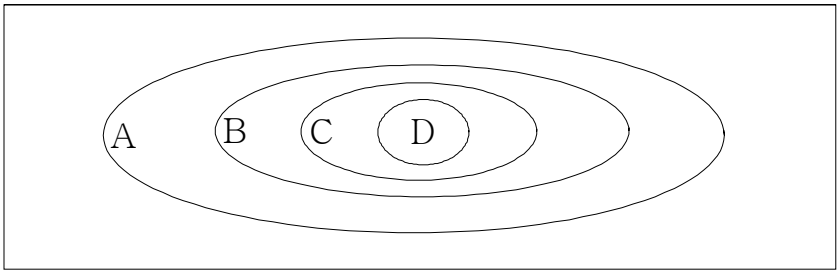

A: 비영리기관 중 모든 면세기관
B: 사회복지 성격의 면세기관
C: 면세가 가능한 기부금 대상 면세기관
D: 면세가 가능한 기부금을 모을 수 있으나 입법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의 정치적 선전활동이 금지되는 면세자선기관
출처 : 손원익, 2000.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미국 연방세법(IRC)에서는 면세공익단체(D영역)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법인, 지역금고, 기금 또는 재단으로서 전적으로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점검, 문학,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관련 기관(경기장 또는 장비에 관련되지 않는 경우), 어린이 및 동물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 방지를 위한 기관 등으로서 순이익이 주주나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그 주요 활동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로비활동이어서도 안되고 공직의 후보자를 위한 정치적 운동에 참여하거나 반대하지(출판·연설물의 배포 행위 포함) 않는 기관을 말한다."

면세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IRC 제501조(c)(3)의 면세공익단체로 속하는 것 외에도 공공재를 제공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아니 되며, 조직운영 수입이 회원의 이익이 되면 안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미국의 공익법인 조세지원제도

(1) 법인세

종교, 자선, 과학, 교육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법인을 면세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연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면세를 받으려면 해당단체는 주식회사, 신탁기금 또는 재단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세단체에 기부금을 증여하는 납세자는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지단체·노동·농업·사회단체 및 오락단체 등도 면세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연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단체도 매년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4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며 고유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2) 증여세 및 유산세

미국의 증여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증여한자가 과세대상자가 되므로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과세대상과 무관하며 증여한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대상자가 된다.[45)]

증여나 유산, 유증, 상속받은 자산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총 소득에

44) 장근호. 2004. 주요국의 조세세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45) IRC 제2502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포함되며 증여세를 부과할 때 종교, 자선, 과학,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면세공익단체 등에 이전되는 재산은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46]

유산세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되는 유산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사망당시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과 생명보험금, 연금 등을 포함한 유산자산에서 장례비용, 사망시 부채, 혼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교, 자선, 과학,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면세공익단체에 이전되는 유산자산은 과세대상인 총 유산 자산에서 제외된다.[47]

(3)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자체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직접세로 미국에서는 지방정부, 주정부나 시, 학교구역 등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부과하여 공공교육 등에 지출한다.

부과대상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부동산과 유·무형 개인재산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입이므로 전체 과세가액과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어 다른 세목의 수입이 크면 그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공익법인의 경우 재산세 면세제도를 두고 있지만 주 헌법은 '지방정부의 과세기반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IRC 제501조(c)(3) 면세공익단체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면제되는 부동산은 단체의 목적에 전용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영리 목적으로 민간에게 임대된 부동산은 과세한다.

(4) 기부금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현금이나 물품, 부동산 등 기타 재산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 모두 연방소득세 공제를 받는다. 개인이나 법인이 자선·종교·교육·과학연구·자연보호 등의 단체에 현금 혹은 물품을 기부할 경우 이를 자선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48],

미국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자선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46) IRC 제2522조
47) IRC 제2522조
48) IRC 제170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하고 있으며 IRC 제501조(c)(3)에 규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모두 자선기부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위한 기부금으로 조건이 붙으면 공제가 되지 않으며 현금이 아닌 자산을 기부할 경우 자산의 시장가치로 소득공제한다.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과 순영업손실 및 양도손실이월금 그리고 배당수입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기부금을 공제한다. 다만, 10%를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은 기부가 발생된 연도 이후 5년간 이월되어 공제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기부가 먼저 공제되며 이월한 기부금과 그 당시 기부금이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49]

개인의 경우 공공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 받는 단체의 성격, 기부하는 자산의 성질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르게 정해진다. 조정된 총소득의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물품에 의한 기부일 경우 조정된 총소득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 공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기부가 먼저 공제되며 조정된 총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미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1) 공익성평가

미국은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라는 공익성평가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유무를 판단하고 면세자격을 부여한다.

조직테스트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상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단체의 면세목적과 주요활동, 기관의 청산, 정치적 활동, 법인의 이사·기타 개인 등의 이익분배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적절히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운영테스트는 단체의 자원이 공익성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익의 범주,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활동, 공익적 지출, 소득 축적, 후원 유인능력 등을 조사·검토한다.

(2) 가산세

공익활동에 대한 면허세적 성격과 민간재단에 대한 규제를 따르지 않는 재단

49) IRC 제170조(d)(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 대해서는 벌칙과세제도인 가산세제도를 두어 민간재단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소득, 자기내부거래행위, 기업주식 초과보유, 자선목적을 위협하는 투자, 과세대상 지출 등에 대해서는 벌과금 형태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은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2%의 세율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총투자수익이란 이자, 배당금, 임대료, 증권 대출금과 관련된 지급액, 저작권사용료 등으로부터 발생한 총소득을 말하며 고유목적무관사업에 대한 과세제도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계산하는 데 포함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50]

자기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적격자에게는 부적격자와 공익법인간에 이루어진 자기내부거래금액의 10%, 관련된 재단운영자에게는 거래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51] 최초 세금이 부과된 후 당해 과세기간 내에 자기거래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부적격자에게는 내부거래관련 금액의 200%, 재단 운영자에게는 관련 금액의 50%상당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재단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최고 한도는 $10,000이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주식과 부적격자가 소유한 의결권주식을 합하여 총주식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그 가액의 10%[52], 면세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협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는 투자액의 10%[53], 로비, 선거 등 과세대상지출을 하는 경우는 출연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그 지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54]

(3) 기타

미국은 정부기관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활동보고서, 재무제표변동표로 규정하고 복식부기를 의무화하였다.[55]

공익법인은 법인의 총수입금액, 그 수익을 얻는데 소요된 비용, 비과세 목적을

50) IRC 제511조
51) IRC 제4941조
52) IRC 제4943조
53) IRC 제4944조
54) IRC 제4945조
55) 손원익, 박태규. 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한 지불금, 대차대조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56] 제출된 신고서 자료는 Guidestar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연방국세청은 비과세승인 후 $25,000의 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자금보고서의 제출의무와 심사, 연간보고서의 공개 의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한 경우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감독 의무를 갖는다.

3.2.2. 일본

일본의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34조에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중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획득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민법 제34조에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갱생보호법인 등을 공익법인에 포함한다.

공익법인 요건에 맞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법인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공익법인의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공익성 검증에도 미흡하다는 등의 비판이 대두되면서 1995년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을 제정하여 규모가 작은 작은 시민단체도 간편하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1년 중간법인법을 제정하여 동창회, 동호회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과 영리의 중간에 위치한 단체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57]

2008년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정의, 인정기준, 절차 등을 대폭 개정·정비한 새로운 공익법인제도 시행하여[58] NPO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신설된 일본의 공익인정법(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59]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

---

56) IRC 제6033조
57) 민병로. 2006.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NGO연구(제4권 2호)
58) 최성경, 2008. 일본 공익법인제도 개혁. 한국민사법학회
59) 2008년 12월에 도입된 '공익법인제도 개혁관련 3법' 중 하나로 공익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주의의 폐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익재단법인으로 인정된 재단을 말한다.

1) 일본의 공익법인 조세지원제도

(1) 법인세

일본의 법인세법도 우리나라와 같이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어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법인세율은 법인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물품판매업, 부동산판매업 등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2) 소득세

소득세는 법인이 이자·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 원천징수 형태로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비과세한다.[60]

(3) 상속세

종교, 자선, 학술연구 또는 그 보급의 사업, 학교교육 또는 교육사업, 육영사업, 그 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공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단, 해당 공익법인이 유증에 의해 그 유증자의 친족이나 이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속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4) 기타 세목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는 공익법인이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내 건물 및 토지, 기숙사 용도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와 준칙주의 도입,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공익인증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60) 일본 소득세법 제11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익법인이 본래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가 비과세되며,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교 건물과 토지, 종교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또는 토지 등의 재산을 등록하면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학술연구, 도서관·박물관의 설치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세, 부동산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5) 기부금

일본은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및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법에 규정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일정 한도를 정하여 소득공제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지출액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특정공익증진법인 또는 인정 NPO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의 5%와 자본금의 0.25%의 합계액에 2분의 1을 곱한 값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기부금은 소득의 2.5%와 자본금의 0.25%의 합계액의 2분의 1을 곱한 값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개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지정기부금 적용단체,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또는 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공제액은 특정기부금의 합계액과 연간 총소득금액의 40% 중 낮은 금액에서 5천만엔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일반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취급되는데 반하여 일반법인 중 비영리형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며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일본의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일본은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특수관계자 이익 취득 금지,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수익사업 운용이익의 공익목적사업 충당, 특수관계자 이사취임 제한, 기본재산의 관리운용의 제한 및 장기차입의 승인요건, 주무관청의 공익법인 검사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익법인의 공익성 검증규정을 세법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공익인증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행정청에서 수행한다.

또한 1985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대차대조표, 재산증감명세서, 재산목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였다.

공익법인 지도감독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의 업무 및 재무 등에 관한 자료를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 열람을 제공하며 소관 관청에서도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시키도록 하고 있다.

국가 소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재무 등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로부터 위탁·추천을 받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각 부성의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기업정보공개를 통한 운영의 투명화를 꾀하고 있다.

3.3.3. 주요국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비교

1) 법인세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영리사업의 소득은 과세하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영리사업 소득의 경우 우리나라는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나 일본은 영리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미국의 경우는 주 해당 관할기관에서 승인되거나 등록하지만 IRC의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라는 공익성 테스트를 통하여 공익성 유무를 판단하여 공익법인에게 법인세 면세자격을 부여하고 각종 세제지원을 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을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5년간 과세이연을 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비과세가 원칙이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자·배당 등과 같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금융자산투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무관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되나 비영리기관이 지배하는 회사나 단체로부터 수취하거나 부채를 통해 얻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인 경우는 과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출연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달리 증여자가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출연 또는 증여를 받은 공익법인은 과세대상과 무관하며 종교·자선·과학·문학·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전하는 증여자는 비과세된다.

일본의 경우는 상속 및 유증에 의해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종교·자선·학술연구 등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익법인이 유증에 의해 그 유증자의 친족이나 이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속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공익법인은 개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3) 기부금

기부금에 대한 과세제도는 각 나라마다 대상단체의 범위와 한도금액 설정 방식, 세율 등의 차이가 있다.

기부금공제대상 범위는 미국의 경우가 가장 광범위하고 단순하며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부금 성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복잡한 공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분류되며 열거된 기부금의 성격과 단체에 따라 차별 공제한다.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금액이 설정되며 법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그 외의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의 기부하는 경우는 법정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일본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법에 규정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용으로 공제한다.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이 인정되고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및 인정NPO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기부금은 일정 한도금액 내에서 손금을 인정해주고 있다.

개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지정기부금 적용단체,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또는 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공제액은 특정기부금의 합계액과 연간 총소득금액의 40% 중 낮은 금액에서 5천만엔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하며 일반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면세공익단체와 그 외의 기타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법인과 개인 모두 연방소득세를 공제 받는다.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단체의 구분없이 모두 10% 한도로 공제하는 단일 공제율을 적용하고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기부한 경우 조정된 총소득금액의 50%, 그 외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는 조정된 총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4) 재산세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하며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미국은 전체 과세가액과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에 따라 재산세 세율이 결정되며 공익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엄격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단체의 목적에 전용·사용하지 않거나 영리목적으로 민간에게 임대된 부동산은 과세한다.

5) 사후관리제도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공익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서는 출연재산·출연재산 매각금액·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주식취득 및 보유의 제한, 자기내부거래 제한 등의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은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라는 공익성테스트를 통해 공익성 유무를 판단하고 면세자격을 부여하며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는 소득, 자기내부거래행위 등 공익활동과 민간재단의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재무상태가 포함된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며 자료를 Guidesta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일본의 사후관리제도는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특수관계자 이익 취득 금지,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수익사업 운용이익의 공익목적 사업충당, 특수관계자 이사취임 제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한 자료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 열람을 제공하며 일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인터넷에 기재·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개선방안

4.1.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1. 공익사업 범위의 확대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유형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공익사업유형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나 공익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아 허가받지 못한 단체는 세제혜택 및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 공익사업을 미리 예상하여 법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공익사업의 지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을 제정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불특정 다수자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설립에 인증을 필요로하되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간법인법을 제정하여 단체의 공통되는 이익을 도모하지만 잉여금이 단체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동창회, 동호회 등의 단체들에게 법인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그 제한조건으로 인해 비영리법인의 제도적인 설립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NPO법과 중간법인법을 참고하여 공익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성정도 및 규모에 따라 세제지원과 혜택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법률제도의 체계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1.2. 수익사업 범위의 축소

우리나라는 현행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재원조달은 대체적으로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보유한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수익사업의 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자산은 재산의 운용에 대한 규제와 수익의 안정성 때문에 예금·현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은 이자수입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목적사업비로 수입금액이 감소되어 수익사업의 제약이 많은 공익법인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산 운용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공익법인이 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증식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공익사업실현에 있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수적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영리법인과는 다른 차별적인 과세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 및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의 배당 및 이자소득과 특정자산의 매매나 교환으로 인한 손익, 중개인에게 위임한 증권으로부터의 투자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하며 일본의 경우는 공익법인의 부동산 등의 금융자산이외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영리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무조건 수익사업으로 볼게 아니라 과세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소득의 발생원천을 살펴 고유목적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용 부동산 등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4.1.3. 중고물품의 공익목적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우리나라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산,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하나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않는다.[61]

기부받은 현물을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재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즉, 제조기업의 경우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기부받아 판매되는 경우 판매물품의 원가가 없기 때문에 판매금액의 전부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6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7-1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아름다운가게’의 예를 들면, 아름다운가게는 중고물품을 기증받아 공익목적으로 판매하는 등 나눔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기업으로 전국에 110여개의 매장과 상당한 매출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고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등의 나라에서는 일반 영리사업자와의 형평성문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공익법인의 재활용 판매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 원활한 폐자원수집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고철, 폐유리, 중고자동차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2]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한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제도 또는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의 활성화와 중고물품의 재활용 활동촉진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중고물품을 공익목적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4.1.4. 기부금 공제범위 및 공제한도 확대

기부금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법인 또는 개인의 부의 사회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세법에 손금산입 및 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부금제도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관련 설립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는 2011년 관련세법 개정을 통해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체계를 법정·지정기부금 체계로 단순화하였고 기부금 공익성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개인·법인 기부금구분을 통일하였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은 30%, 법인은 10%로 확대하고 모

62) 조세제한특례법 108조 및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금 기관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모금단체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였다.

2012년에는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부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활동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지정기부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며 미국의 경우는 기부받는 단체의 성격과 자산의 성질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르게 정해지기는 하지만 조정된 총소득의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일본의 경우 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공제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모금기관의 연도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모금액이 5.8배 증가하였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개인의 기부가 기업의 기부를 초과하였다. 이는 기부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세법에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기부금만이 조세감면되므로 현행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공익활동의 범위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공제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기부에 대한 지정기부금 공제율과 공제대상을 확대하여 기부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들과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사회 환원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안정적 재원을 자발적기부에 의해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기부금제도는 확대・개선되어야 한다.

4.1.5.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주식이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는 편법상속과 공익법인 등이 지주회사화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내국법인의 공익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 등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약하며 기부자의 주식출연 형태의 기부를 제한하여 공익법인의 안정적 수입확보를 막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의 경우 민간재단에 대하여 동일법인 의결권주식의 보유한도를 20%로 정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주식이 기부되는 경우에는 동일법인 의결권주식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식출연에 제한이 없다.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확대를 통한 안정적 재원마련과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해서는 출연한도를 5%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의 전부 또는 일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4.1.6.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완화

현행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상속·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이때 성실공익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63]

-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외부감사 이행
- 전용계좌 개설·사용
-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출연 또는 취득시점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의 90%이상을 직접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이었으나 2008년 개정으로 상기와 같은 5가지 요건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여론으로 2010년 세법개정시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사용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공익법인은 대체로 규모가 크지 않아 출연재산의 크기가 1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100억원 미만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공익법인의 재정적 문제를 일으킨다.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 이행'의 요건을 완화하여야한다.

4.2.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1. 주무관청 및 설·폐기준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설립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다.[64] 즉,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로써 법인이 성립되어 이후 세제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허가는 공익법인의 주된 목적사업과 관련한 주무관청에서 담당하고 세무업무는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익법인은 주무관청과 국세청의 이중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각 부처별로 설·폐기준이 달라 일관된 공익법인 정책을 시행하기 힘들어 공익법인 간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허가 및 관리, 설·폐기준이 각 주무부처마다 상이해 공익법인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수집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표 4-1>의 기부관련 정부기관 및 소관법령을 살펴보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 및 감독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4)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4-1> 기부관련 정부기관 및 소관 법령

구분	주요기능	소관법령
기획재정부	●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세제 지원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비영리공익법인의 결산자료 공시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 업무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및 관리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지도 및 감독 ● 나눔문화대축제, 포상 등 나눔 문화 확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각 부처 시/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리 및 감독권 ● 기획재정부에 기부단체 지정 추천 등	● 민법 및 개별법

출처: 손원익. 2012.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한국조세원.

다원화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산하기관이나 단체를 설립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일된 설·폐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정부부처가 아닌 독립된 공익단체위원회를 설립하여 공익법인을 관장하고 설립에 대하여 인가주의나 준칙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지만 설립허가를 허가주의로 유지하는 이상 이러한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마련은 공익법인 설립 허가 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무관청의 재량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관리주체의 일원화는 근무인력과 조직을 단일화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일관된 공익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며 설립 후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어 공익법인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4.2.2. 공정한 공익성 검증시스템 도입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세법상의 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혜택을 부여받는다. 즉, 별다른 공익성 검증 절차 없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에 의해 공익법인이 설립되며 공익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없다. 따라서 공익법인 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공익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세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면세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라는 공익성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조직테스트는 공익법인의 면세목적과 주요활동, 기관의 청산 등 정관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운영테스트는 공익법인의 활동이 정관에 규정한 면세목적의 활동인가를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또한 공익인정위원회를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내각부에 설치하여 공익성을 심사하여 공익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토절차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공익법인은 공익사업활동을 시행함에 따라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므로 엄격하고 적정한 공익성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익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익법인의 정관 내용을 검토하고 정관에 따른 공익활동을 평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 설립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공익성을 검토하고 조직·운영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공익성 검증시스템의 도입은 공익법인의 공익성 유지에 기여하여 기부활동을 촉진시키고 부당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잘 발달되어있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익성 검증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4.2.3.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 마련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공익법인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관리기관 또한 없어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에서 개별적인 별도의 회계기준을 두고 있는데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사학기관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이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약 61%를 차지하는 종교보급법인의 경우 설립근거법 및 회계처리 규정,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습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복식회계 대신 현금주의의 단식회계로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의 형식이 달라 일관된 형식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공익사업 달성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대차대조표, 재산증감명세서, 재산목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였다. 미국의 경우 또한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활동보고서, 재무제표변동표로 규정하고 복식부기를 의무화하였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주장이지만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복잡하고 다양하더라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규격화하여야 한다.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마련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상이하여도 통일된 형태와 내용을 갖는 재무보고서가 작성되므로 다양한 공익법인들의 활동내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한 정보가 제공되며 재무정보를 상호 비교가능하게 하여 기부자들이 기부대상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주무관청 및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공익법인의 재무보고서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법인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4.2.4. 외부감시체계 구축 및 강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일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익법인의 재무 및 운영상황과 공익성을 파악하고 기부금 사용·운영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가이드스타(Guidestar) 한국재단이 설립되어 한국가이드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타 홈페이지에 비영리단체의 운영활동과 회계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등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한국가이드스타에 등록 및 운영·회계정보를 공개하는 단체는 아직 미비하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 또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에 제출한 공익법인 신고서 자료가 가이드스타를 통해 공개되며 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 많은 단체가 등록되어 활성화 되어 있다. 또한 민간감시단체인 BBB(거래개선협회, Better Business Bureau)의 전국자선연맹(Wise Giving Alliance)에서 자선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기부자들에게 자선단체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운영에 대한 투명성 감시와 기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가이드스타는 현재 미국세청으로부터 Form 990을 제공받아 180만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연합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 감사 및 사무책임자 공시와 결산서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외부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익법인의 기부금이 기부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금 사용·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익활동내용을 감시하는 외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주의로 인한 주무관청의 재량이 과다해지는 것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감시단체의 감시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세청은 결산서류 등 국세청이 확보한 공익법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부자 및 이용자들 모두 쉽게 이용가능하고 공익법인 간 비교분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민간감시단체와 정보를 공유하여야한다. 또한 공시대상기준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낮추고 공시를 원하는 단체의 경우 모두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많은 공익법인의 활동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 기부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감시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4.2.5. 수혜자선정 시스템 마련

현행 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기본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목적사업의 수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없이 공익법인 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공익사업활동 분야와 이에 따른 수혜는 현 사회의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다. <표 4-2>의 2010년 주무관청별 재단 현황을 살펴보면 각 시, 군, 구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재단이 46.8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3.44%, 보건복지부가 14.06%를 차지한다. 또한 2009년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재단이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주로 교육, 사회복지, 문화 분야이며 현 사회의 사회공헌 수요가 주로 교육·학술, 사회복지, 문화 예술 분야임을 시사한다. 또한 기타는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시, 군, 구청 등으로 공익사업분야가 농촌, 환경, 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 주무관청별 재단 현황

(단위: 개)

주무관청	2007	2008	2009	2010
교육과학기술부	34	34	33	30
	(53.13%)	52.31%	50.77%	46.88 %
보건복지부	14	17	13	9
	(21.88%)	(26.15%)	(20.00%)	(14.06%)
문화체육관광부	7	7	7	15
	(10.94%)	(10.77%)	(10.77%)	(23.44%)
기타	9	7	12	10
	(14.06%)	(10.77%)	(18.46%)	(15.6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합계	64	65	65	64

• 시·군·구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포함
• 기타: 서울특별시, 농림부, 살림청, 각 시·군·구청 등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공익법인은 국가의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만큼 목적사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수혜자에 대한 공평한 기준마련과 사회의 필요에 의한 수혜자를 한정하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 수혜자선정 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여 수혜자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정관에 명시·공시하여 투명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고안하여야 한다.

수혜자선정 시스템의 마련은 공익활동의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수혜자를 공평하게 선발하고 균형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의 불평등을 해소시켜줄 것이다.

Ⅴ. 결 론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현상, 계층 간 양극화현상 등 많은 사회적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뚜렷해졌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문제, 사교육비 부담 증대, 허니문퓨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환경이 다원화되고 공공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분야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역할의 변화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문성 결여문제와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제3섹터로서 공익법인이 사회에서 감당하는 공익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단계에 있어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이라 예상되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참여와 사회적 역할증대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최근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관심이 증가되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과 민간공익법인의 활동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권으로는 처음으로 자선 공익재단법인 '외환은행나눔재단'을 만들어 불우이웃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국제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삼성생명보험이 세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의료·보육·건전청소년 육성 사업·실버타운 및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운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국가에서는 공익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 면제 등 여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으로 상속세·증여세 회피, 출연재산 사적횡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부금의 감소로 이어져 공익법인의 재정악화와 사회적 역할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도덕성 및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조세지원과 사후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미국과 일본의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비교해보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범위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제한적인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단체는 세제혜택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공익사업 지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의 NPO법과 중간법인법을 참고하여 공익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성정도 및 규모에 따라 세제지원과 혜택을 차등화하여야 한다.

둘째, 공익법인은 수익의 안정성의 이유로 대부분 예금과 현금으로 재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익법인의 재원마련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이자·배당소득 등 고유목적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는 등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셋째,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현물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재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중고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하는 사회기업들이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고물품의 재활용활동 촉진과 저변확대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활용품 판매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제도 또는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기부가 기업의 기부를 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30%로 미국의 공제한도 50%, 일본의 40%에 비해 매우 낮다.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통한 공익법인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인기부에 대한 지정기부금 공제율과 공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 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주식출연 형태의 기부를 제한해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하여 출연한도를 5%에서 20%로 상향하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현행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공익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규모가 크지 않아 외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기 위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재정적 문제를 일으킨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허가는 목적사업과 관련한 주무관청에서 담당하고 세무업무는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중통제를 받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공익법인의 설·폐기준이 달라 공익법인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일관된 공익법인정책을 시행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국가 산하기관이나 단체를 설립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명확하고 통일된 설·폐 기준을 마련하여 설립과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별다른 공익성 검증절차 없이 주무관청의 설립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에 의해 공익법인이 설립되며 공익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세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 일본의 공익성 심사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익성 검증시스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익활동을 평가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에서 개별적인 별도의 회계기준을 두고 있으며 일부 회계처리 규정 또는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미국과 일본 모두 복식부기를 의무화 하였고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을 의무화 하였다. 우리나라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일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무관청의 재량이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와 기부자의 유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재무 및 운영상황과 공익활동내용을 감시하는 외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는 외부감시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대상 확대를 위하여 공시대상기준을 낮추어 공시를 원하는 단체의 경우 모두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혜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수혜자 선정을 자체 재량에 맡기고 있다. 공익사업활동의 분야와 이에 따른 수혜는 현 사회의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며 사회적 필요에 의한 수혜자를 한정하는 통제가 필요하다. 공익활동의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수혜자를 공평하게 선발하고 균형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에 대한 공정한 선정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과세제도를 조세지원제도와 사후관리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현행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제한적인 공익법인 현황을 바탕으로 과세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개선방안이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차후 정확한 통계자료와 심도 있는 실증적 연구로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본 연구의 개선방안들이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김일석. 2007. 공익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석. 2007.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김갑식. 2009.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활 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현. 2011.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수, 김태훈. 2011.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국세청. 2011, 2012. 공익법인 세무안내

국세청. 2012.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2011, 2012.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2007~2011. 국세통계연보

고재국. 2010.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병로. 2006.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NGO연구(제4권 제2호). 한국NGO학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손원익. 2012.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재정포럼(4월호) 한국조세연구원

이호성. 2006.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중기. 2010. 홍익법학(제11권).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2010.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종섭. 2011. 공익법인 설립・운영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한. 2001. 정부의 공익법인 지원방안 : 재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조성한. 2002. 공익법인으로서의 재단 육성 및 규제정책. 한국정책논집. 한국정책연구원

조영탁. 2007.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주석. 2004. 공익법인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태. 2009. 공익법인의 본질재고를 통한 활성화에 대한 일고찰. 순천향 사회과학연구(Vol. 15)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경실. 2011.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합리적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ttp://taxinfo.nts.go.kr.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http://www.guidestar.or.kr. 한국가이드스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단계에 있어 앞으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제3섹터로서 공익법인이 사회에서 감당하는 공익활동 또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어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진다.

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여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사후관리제도를 두어 조세지원제도가 악용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를 조세지원제도와 사후관리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주요국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비교해보았다. 또한 그로인해 얻은 시사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공익사업 범위의 확대; (2)고유목적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3)공익목적의 중고물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4)기부금 공제대상 및 개인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5)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비과세 한도 확대; (6)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관리주체의 일원화 및 통일된 설·폐기준 마련; (2)공정한 공익성 검증시스템의 도입; (3)통일된 회계처리 기준 마련; (4)외부감시체계의 구축 및 강화; (5)수혜자선정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어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공익법인, 과세제도, 조세지원제도, 사후관리제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in Nonprofit Corporation

Ji-Suk Kang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Bong-Hyeon Kim

As it stands at the initial stage of becoming a welfare state, Korea is anticipated to have an increased demand for public services with time, and more nonprofit corporations are expected to play significant roles in society as the third sector in terms of breadth and depth. Korea is therefore in desperate need of overhauling its taxation system as it is currently applied to not-for-profit organizations.

Advanced states provide a variety of tax breaks to nonprofit corporations for performing roles that could be assumed by governments, at the same time trying to prevent manipulation of the system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orough follow-up measures.

This research paper looks into Korea's current taxation system for nonprofit corporations in the areas of tax breaks and follow-up measures, and makes comparison with the systems of other major advanced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and comparison, the paper specifies the problems faced by Korea's current system, and suggests ways of making improvements.

In summary, this paper proposes that Korea make the following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mprovements in its taxation of nonprofit corporations: (1)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nonprofit activities; (2)tax exemption on revenues obtain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corporation's reported activities; (3)the exemption from VAT on the sales of secondhand items for the public interest; (4)the expansion of tax exemption on donations in terms of the scope and amount of donations; (5)the expansion of tax exemption on stocks donated by domestic companies; and (6)the relaxation of the criteria for decent nonprofit corporation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ive ways to improve the follow-up measures: (1)the integration of supervision under a single agency and the preparation of unified establishment and closure standards; (2)the introduction of a fair verification system concerning common well-being; (3)the preparation of uniform bookkeeping standards; (4)the establishment and enhancement of an external supervisory system; and (5)the establishment of a beneficiary selection system.

The author is hopeful that as a result of this study, Korea will have more nonprofit corporations that offer more flexible public services in its rapidly evolving society.

Subject terms: nonprofit(or not-for-profit) corporations, taxation, tax breaks, follow-up measure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